

서울고등법원 2021. 9. 8 선고 2020나203257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주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

변 론 종 결 2021. 7. 7.

판 결 선 고 2021. 9. 8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8. 28. 선고 2019가합197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(선정당사자)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A에게 72,388,359원, 선정자 C에게 31,023,582원, 선정자 D에게 36,194,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. 7. 30.부터 2021. 9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선정당사자)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10%는 원고(선정당사자)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A에게 110,798,509원, 선정자 C에게 47,089,366원, 선정자 D에게 55,399,2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. 5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이하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을 합쳐서 '원고들'이라 한다]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들

주문 제1항과 같다(다만 2015. 7. 3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)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는 전주시 F 임야 1정 7무보 중 1/3 지분을 소유하다가 1962. 6. 15. 사망하였는데, 사망 당시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I과 자녀인 피고, J, K, L, M, 원고들이 있었다.

나. 위 임야는 1978. 1. 25. 분할, 지목변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① 전주시 덕진구 G 임야 2,182㎡, ② 전주시 덕진구 H 전 1,312㎡, ③ 전주시 덕진구 W 임야 992㎡, ④ 전주시 덕진구 X 임야 5,455㎡가 되었다(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하고, 위 토지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'이 사건 ○ 토지'라 한다)

다.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1983. 6. 21. 구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3562호, 실효, 이하 ‘특별조치법’이라 한다)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1962. 6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라. 피고는 2003. 8. 12. 이 사건 각 토지의 2/3 지분을 소유한 Y와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1, 2 토지의 지분 2/3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이 사건 3, 4 토지의 1/3 지분에 관하여는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한편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N 임야 2,114㎡(이하 ‘N 토지’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15. 5. 31. N 토지와 이 사건 1, 2 토지를 O에게 대금 7억 원에 매도하고, 2015. 7. 30. 위 토지들에 관하여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5, 15, 16, 18, 20, 21, 2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9행부터 제10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(1) 이 사건 1, 2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익

가) 피고가 이 사건 1, 2 토지, N 토지를 합계 7억 원에 O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, 제1심 감정인 V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7억 원의 매매대금 가운데 이 사건 1, 2 토지의 시가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은 총 445,963,999원[= 700,000,000원 × (316,390,000원 + 221,728,000원)1) ÷ 844,648,000원2) , 원 미만은 버린다. 이하 같다]이다.

나) 이 사건 1, 2 토지의 위 매매대금 중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.E는 이 사건 1, 2 토지의 1/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, 이후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

마쳐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, 2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1/3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 사건 3, 4 토지의 1/3 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자인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대신 이 사건 1, 2 토지의 나머지 2/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(대법원 1999. 6. 17.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4다230894 판결 등 참조), 위 공유물분할을 통해 E의 상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3, 4 토지의 1/3 지분이 그 상속재산으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이 사건 1, 2 토지의 2/3 지분과 교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1, 2 토지를 O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,3) 이는 위 공유물분할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원고들의 추인 의사도 포함한다.

따라서 피고는, E가 소유했던 이 사건 1, 2 토지 중 1/3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1, 2 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(2) 상속지분의 계산

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, E, I 및 M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의 내역은 다음 계산표와 같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1, 2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다음 계산내역과 같다.

① 원고 A : 108,582,538원(= 445,963,999원 × 532/2185)② 선정자 C : 46,535,373원(= 445,963,999원 × 228/2185)③ 선정자 D : 54,291,269원(= 445,963,999원 × 266/2185)』

○ 제1심판결 제11면 1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(3) 소결론

그렇다면, 피고가 이 사건 1, 2 토지 및 N 토지를 O에게 매도한 후 O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 상당액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, 그 상당액으로서 원고(선정당사자) A에게 108,582,538원, 선정자 C에게 46,535,373원, 선정자 D에게

54,293,269원 및 (ㄴ) 위 각 돈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[원고(선정당사자) A에게 36,194,179원, 선정자 C에게 15,511,791원, 선정자 D에게 18,097,089원]에 대하여는 피고가 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날인 2015. 7. 30.(민법 제536조, 제748조 제2항에 따라, 매매대금의 지급과 통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된 일자부터 기산한다)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. 8. 28.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(ㄴ) 위 각 돈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위 2015. 7. 30.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. 9. 8.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전지원, 판사 이예슬, 판사 이재찬

선 정 자 명 단

1. A

2. C

3. D

끝.

1) 이 사건 1, 2 토지의 시가 합계액에 해당한다.

2) 이 사건 1, 2 토지 및 N 토지의 시가 합계액에 해당한다.

3)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분에 따른 공유지분권에 대한 피고의 매매를 추인하고 그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15550 판결 등 참조).